

2024년 대비 노동법 핵심판례정리 정오표(2024.04.15. 기준)

쪽수	위치	원내용	수정내용
59쪽	4번 위	2번과 3번의 판례법리가 빠짐	2,3번 판례법리 추가 (아래)
판례법리 및 사안적용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개선안을 설명하는 공문에서 별정직원 재채용자체를 특별퇴직에 대한 혜택으로 명시하고 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채용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채용부분은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재채용기회 부여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 재채용 부분은 특별퇴직조건 중의 하나로서 특별퇴직을 선택한 근로자에게 특별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재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을 부여할 경우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지위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특별퇴직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을 재채용 신청의 기회만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외환은행지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74쪽	핵심쟁점 30번 사건요약 맨 밑의 줄	다른 사안	다른 사안.
93쪽	3.(1)목차 밑에서 2번째 줄	경영성과급을	경영성과급을
98쪽	핵심쟁점 45번 위로 2번째 줄	2018년 12월 18일	2013년 12월 18일

쪽수	위치	원내용	수정내용
117쪽	2번 사건도해	임금... 지급 환산지	임금... 지급 환산시
117쪽	2번 관련법령 3번째 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124쪽	사건도해 Q1	연차휴가 출근을 산정?	연차휴가 출근을 산정?
152쪽	사건요약 1번째줄	불기속 기소	불구속 기소
191쪽	관련법령	민법 제66조..	민법 제660조..
194쪽	사건요약 1번째 줄	재고용하여만 60세...	재고용하여 만 60세..(띄어쓰기)
197쪽	사건도해 맨 밑의 줄	종료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201쪽	위에서 8번째 줄	기능 하여야 할	기능하여야 할 (붙여쓰기)
208쪽	핵심쟁점 100번 위로 3번째 줄	권한 및 정도 대표이사가	권한 및 정도, 대표이사가 (심표넣어 구분)
226쪽	사건도해 1번 두 번째 문단 1번째 줄	다음날 아침.	다음날 아침
229쪽	사건도해 맨 밑의 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각	중노위 재심신청 기각
233쪽	사건도해 3번 2번째 줄	전보잘령	전보발령.
308쪽	2번 목차.	핵심쟁점 130 참조	핵심쟁점 126 참조
310쪽	보충판례 제목	강행규정을 위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320쪽	사건요약 맨 밑의 줄	해고된 자가부당해고라며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라며 (띄어쓰기)
337쪽	사안적용 1번목차 3번째 줄	심대한 혼란 내준 막대한 손해를...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357쪽	사건도해 Q2	퇴거응죄가 성립하는가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가
401쪽	참조판례 2번째 문단 2번째 줄	지급된 금품의 액수	지급된 금품의 액수 (밀줄)
407쪽	3번 2번째 문단 1번째 줄	경위	경위 (밀줄)
410쪽	2번 3번째 줄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밀줄)
412쪽	판례법리 밑에서 3번째 줄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밀줄)
414쪽	도해 맨 밑의줄	2012.3.1~2016.2.29	2013.7.22.~2015.7.21
431쪽	사건도해 맨 밑의 글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전